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7.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GKI Korea Ltd.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독점0614, 2000독점0615)	GKI Korea Ltd.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캬코엘비인베스터(주)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대규모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2. 23 주식인수행위를 하고 2000. 3. 23과 3. 29에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 과태료 납부(단위:천원) GKI Korea Ltd. : 15,000 한국자산관리공사:15,000
(주)캐릭터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164)	주식회사 캐릭터랜드는 '99. 6. 14 ~ 7. 8 기간중 서울경제와 조선일보에 자신의 캐릭터가맹점 모집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3,000만원 투자시 월 250만원, 6,000만원 투자시 월 690만원 순익 거든", "한성대점의 경우 실평수 6평 매장에 하루 매출 25~30만원을 꾸준히 유지"라고 표현하여 마치 자신의 가맹점을 개설하기만 하면 누구나 순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7. 1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화장품(주) 및 (주)혜명교역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소기0255)	한국화장품(주) 및 (주)혜명교역은 1999. 8월 ~ 12월중 22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에나(EHNA)」화장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 있는 여자의 선을 원하세요? 그럼, 매일 1km씩만 달리세요. 아니면...에나를 만나시던지", "바르는 게 운동입니다"라고 표현하였으며, 미국의 민간시험연구기관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와 일본 도쿄 도지사의 화장품 수입제품서만 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FDA 화장품 관련 테스트와 일본 후생성의 화장품 수입적격테스트를 통과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이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이미 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삼성물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438)</p>	<p>삼성물산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주식회사 및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컨소시엄인 현대사업단과 경쟁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하면서 아파트의 시세,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있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마치 브랜드 가치에 의해 자신의 아파트가 현대측의 아파트보다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행위를 하였고,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모두 권리자로 되어 있어서 현대사업단이 시공한 전체 아파트에 현대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I로고를 특별히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업단이 일부 아파트에 I로고를 사용할 것이며 I로고 아파트는 현대로고의 아파트보다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행위를 하였으며, 비디오물을 통하여 '근대건설'이라는 사업자와 '삼성' 간의 재판의 형식을 빌려 '근대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 약속과 달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재건축사업 추진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수상실적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삼성'은 고객과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고 아파트가 만족스러우며 최근 수상실적이 많고 재건축분야의 전문가인 것으로 표현, 소비자로 하여금 현대건설을 연상케 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현대건설(주) 및 현대산업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441)</p>	<p>현대건설(주) 및 현대산업개발(주)는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삼성물산(주) 및 (주)대우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경쟁하면서 2000. 3. 7부터 3. 8까지 카탈로그 등에 광고시 삼성물산이 전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동을 건축하고 대우는 기타 토목, 복리시설 등을 책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A, B사가 아파트 동을 분리시공할 때 B사가 시공한 아파트 동 외벽에 A사의 로고를 사용했을 경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신한 공문서(2000. 3. 3, 광고 42920-133)를 게재함과 아울러 "공정위! 대우, 삼성 단 일브랜드 불가 판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삼성의 단일브랜드 사용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불가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한 '질의회</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신'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2000. 7. 1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6개 전기공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1공동1668)	우남전설(주), 삼화종합건설, 삼성건업, 유영상사(주), 삼성전기산업(주), (주)신보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발주한 「98. 특수단가계약공사 긴급입찰」 중 서부지점 관내의 5개 지역별 입찰에서 각 지역별로 낙찰업체는 입찰공고된 가상설계가격의 범위 내인 94.98%~94.07%로 투찰하여 낙찰된 반면,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은 모두 낙찰이 될 수 없는 가격인 동 가상설계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100.06%~109.04%)하여 탈락한바, 입찰 전날인 1997. 12. 14 모임을 갖고 지역별로 수주예정업체를 정하여 놓고 동 수주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기로 합의하여 동 입찰 중 서부지점 관내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천원) 우남전설(주) : 9,700 삼화종합건설 : 9,700 삼성건업 : 9,700 유영상사(주) : 9,700 삼성전기산업(주) : 9,700 (주)신보 : 9,700</p>
포항종합제철(주)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0독관0235)	포항종합제철(주)는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1978. 6. 1부터 자신의 3개의 선재공장에서 제품소재 및 제품의 입출하·절단·연마 및 마킹작업 등의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화성기업(주)에게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999. 3. 17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요구한 후 5. 8 자신의 퇴직임원을 경영권 인수자로 통보하였으며, 화성기업(주)가 사업양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내자구매실장 등 협력계약 관계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화성기업(주)에게 사업양도를 촉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1999. 12. 3. 3년 기간으로 연장한 계약으로 만료시점인 2000. 3. 31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호 위반	<p>◎ 거래상지위남용 및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협력작업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2000. 7. 13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경동보일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9소기1353)	주식회사 경동보일러는 '99. 6월부터 2000. 5월까지 TV, 신문 등을 통하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콘덴싱가스보일러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두달치 가스비, 그냥 벌었네!”라는 표현과 함께 “가스비를 20%나 줄인 경동콘덴싱가스보일러...”, “경동콘덴싱의 가스비 20% 절감 기술”, “자사 일반형 대비 가스비 20% 절감 경동콘덴싱” 등의 표현으로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99. 8월경 신문을 통하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스텐레스보일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스텐레스보일러와 철보일러를 대비시킨 그림과 함께 큰 글씨로 “우리나라에는 2종류의 보일러가 있다”는 표현 아래 “열효율이 높아 난방유가 적게 들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중앙일간지 중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7. 14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신원의 기업결합신고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626)	주식회사 신원은 (주)신원유통을 합병하면서 1999. 11. 11 합병등기를 완료한 후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2000. 5. 15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위반	◎ 과태료 납부 : 3백만원

2000. 7. 1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하이마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728)	주식회사 하이마트는 2000. 2. 12부터 5. 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하이마트' 전국 직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15단×37cm(전면)의 크기로 총 17회에 걸쳐 할인판매행사 광고를 하면서 할인율이나 비교가격은 최근 상당기간 자신이 실제 판매하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등이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비교 가격 또는 할인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명시없이 단지 “298,000원→119,000원”, “60%” 등으로 표현하여 소비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판매해 오던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만 가격을 특별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2000. 7.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고양시부동산중개업자정보교류회 및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건 (2000단체0552)	고양시정보교류회와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는 1999. 10. 16 부동산 정보망 이용계약인 「기업통신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후 마을단위의 지역친목회에 가입하지 못한 비회원에게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전산망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분리·차단하였고, 이에 대해 비회원들이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에게 전산망의 분리 및 차단행위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해당 지역에 가입한 후 전산망을 활용하라는 문서를 통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 중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토록 하며, 고양시부동산중개업자정보교류회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역구내편의시설물운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일반조건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00약제009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역구내편의시설물운영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일반조건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임대차 종료시에 고정시설물, 전기·수도공급시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킨다고 규정하여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였고, 제14조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그 비용을 최소한 일부라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부담토록 하였으며, 제17조제5호 및 제7호에 계약의 해지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두어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철거 등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 자신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무조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관법 제17조 위반	◎ 해당 계약서 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등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행정주체로서 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위탁업무로서 제공되는 각종 서식	◎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광사0455)	등을 교부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증명서 배부 및 모든 행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여 전라남도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회비 등의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각종 서식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정하여 1993. 2. 1부터 시행하였고 2000. 1. 12 신규가입비를 미납한 미래자동차매매상사 등 8개 구성사업자에게 2000. 1. 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00. 1. 17부터 각종 서식 및 전산업무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업체당 매매등록대행종사원의 정원은 1명으로, 매매알선종사원의 정원은 6명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매매알선종사원이 종전에 근무했던 매매상사를 사직하고 다른 매매상사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1993. 2. 1부터 시행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	위를 하지 말고 조합비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매매사원관리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0. 7. 22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미건의료기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443)	주식회사 미건의료기는 (주)세라젠의료기 및 동 회사의 대리점을 상대로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동 회사 및 동 회사의 대리점은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6. 30, 9. 16, 2000. 1. 25, 2. 14 동 회사 및 동 회사의 대리점에 가처분 결정 사실을 통보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마치 동 회사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여 그 책임으로 인해 도산에 이를 것이라든지 동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그 피해가 각 대리점에겐 전가될 것이며 자신과의 대리점 개설에 대하여 상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유포하여 온열치료기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대리점 및 신고인의 대리점에 전지크기(78.8cm×109cm)의 공표문으로 7일간 공표토록 함